



: 2018-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6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6가합56684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천지항공여행사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30,393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712,206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B교회의 목사인 C은 2013. 3. 19. 성지순례 여행을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여  
행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여행기간을 '2013. 5. 6.부터 2013. 5. 17.까지 11박 12일'로,  
여행지역을 'D'로, 여행인원을 '39명'으로, 여행요금을 '1인당 309만 원'으로 각 정한 국  
외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여행을 '이 사  
건 여행'이라 한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의 요금에는 항공기·선박·철도 등 운임, 숙박·식사료, 국내  
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지입장료, 여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 서



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14조(손해배상)

-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나. 원고의 상태 등

1)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3. 5. 6. 출국하여 2013. 5. 7. 05:40경(현지시각이다. 이하 같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2013. 5. 7. 오전부터 이스탄불 시내 관광을 하고 같은 날 17:10경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30경 카파도키아 인근의 카이세리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카파도키아의 숙소에서 원고와 같은 방을 사용한 E는 2013. 5. 7. 22:00경 동행한 F에게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알렸다. 피고의 직원인 G는 2013. 5. 8. 오전 F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이스탄불로 데리고 가서 귀국시키라고 말하였다. F은 같은 날 17:40경 원고와 카이세리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00경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스탄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지여행사의 가이드인 H과 함께 원고를 데리고 이스탄불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3) 원고의 아들인 I는 2013. 5. 9. 05:45경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였다. I는 같은



날 11:00경 원고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F 등과 함께 원고를 J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J 병원은 같은 날 15:00경 원고를 하세키 국립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하세키 국립병원은 검사 결과 원고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viral meningitis)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였다.

4) 원고는 2013. 6. 1. 국내로 후송되어 길병원에서 헤르페스 뇌염(herpes encephalitis)으로 진단·치료를 받고, K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9. 28.경 신체감정일 현재 보행은 가능하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인지·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1, 2,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1) 이 사건 여행 중 원고에게 뇌염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약관 제8조 등에서 정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830,712,206원[원고의 과실 20%를 참작한 소극적 손해 120,773,100원(= 일실수입 150,966,375원 × 80%) 및 적극적 손해 629,939,106원(= (기왕치료비·국내 호송비·보



호자 현지 체류비 82,533,190원 + 개호비 704,890,693원) × 80%, 원 미만 버림}에 위자료 8,000만 원을 합한 금원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여행은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여행인솔자로서 동행하지 않고 현지안내원만이 동행한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헤르페스 뇌염은 원고가 기존에 가진 질병에 의한 것인데, 원고로부터 그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피고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원고에게 외부적으로 심각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여행 중지를 거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는바, 의료기관이 아닌 피고가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현지의 의료 환경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 사건 여행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출국 직전에 지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건강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하였는바 원고의 질병이나 과실이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더 빨리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F이나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현지여행업자인 L 여행사의 가이드인 M, H은 원고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인식한 즉시 원고가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 약 30시간이 경과하도록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F이나 L 여행사의 고용인인 M 등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B교회의 목사인 C으로부터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의뢰받고 11박 12일 동안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을 방문하는 이 사건 여행의 일정 전반을 계획·수립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4조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명시한 것인데, 다수의 여행자가 참가하는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수립하는 피고로서는 여행 중 여행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선지 인근의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을 미리 조사·검토함으로써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여행의 행선지나 피고의 업종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현지여행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 L 여행



사의 가이드인 M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F이 '인솔자'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C, F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F에게 터키 현지가이드를 돕도록 부탁을 하여 여행에 참여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F이 카파도키아에서 원고를 간호하고, 피고의 직원인 G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이스탄불까지 데리고 와 L 여행사의 가이드인 H과 함께 숙소로 이동시킨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F이나 L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인 M, H은 피고의 의사 관여 아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 제공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13. 5. 7. 18:30경 카이세리에 도착한 직후부터 구토를 하고 중얼거리거나 빵을 옷에 문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부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장애나 행동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F이나 현지가이드인 M 등은 원고를 즉시 카이세리 지역의 의료진에 데려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5. 8. 저녁 이스탄불로 오는 비행기에서 다시 대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F이나 현지가이드인 H은 원고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아들인 I가 이스탄불에 도착한 이후인 2013. 5. 9. 11:00경에서야 이 사건 여행 중 처음으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F이나 L 여행사의 가이드들은 원고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과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장애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의 원인, 여행자의 건강 상태, 치료 조치까지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안전배려의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장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 중 이상 증세를 보인 원고를 제때 의료진에 데려가지 않은 피고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장애가 발생 또는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감염성 질환인 헤르페스 뇌염은 초기에 치료받지 않는 경우 치사율이 7~80% 정도로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발한 후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그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여행 중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상, 성격변화, 기억장애 등의 증세를 보인 후 약 30시간이 넘어서야 그 아들에 의해 비로소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비록 원고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 사건 여행 시작 전에 재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질병 등 건강 상태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여행 중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방치된 점이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08년경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소수포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3. 5. 3.경 발열 및 급성 인두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여행 시작 직전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발 시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본격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3. 5. 7.경 밤 또는 다음날 아침 카이세리에 소재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이스탄불에 도착한 즉시 공항 인근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보인다.

### 3) 책임의 제한

가) 따라서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여행 시작 이전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헤르페스 뇌염은 원고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발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장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80%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여행 직전 발열이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나마 지남력을 상실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여행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여행 중 본격적인 이상



증세를 보인 시점 이후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에 따른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한 2013. 5. 8.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 재산상 손해

#####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부이므로, 각 해당 기간의 도시 일용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계산한다.

(3) 이 사건 장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IX-B-4)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서에는 'IX-B-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X-B-4'의 오기로 보인다).

(4)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장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80%로 봄이 상당하다.

(5) 원고의 질병이나 병적 소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2013. 5. 8.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부분 기재와 같이 31,923,635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1) 원고는 2013. 5. 9.부터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악화된 헤르페스 뇌염이나 이 사건 장애에 관한 치료비 등으로 48,408,04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헤르페스 뇌염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인천길병원이나 K병원에 아래와 같이 입원하여 각 해당 환자부담금 합계 34,643,860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치료비 등이 34,643,860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2013. 6. 1.부터 2013. 8. 8.까지의 입원치료비 10,318,450원

(나) 2013. 8. 8.부터 2013. 11. 11.까지의 입원치료비 7,877,350원

(다) 2013. 11. 11.부터 2013. 11. 23.까지의 입원치료비 1,947,950원

(라) 2013. 11. 23.부터 2014. 6. 14.까지의 입원치료비 14,500,110원

(3) 각 입원기간 말일에 환자부담금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질병이나 병적 소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2013. 5. 8.을 기준으로 기왕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이 6,706,172원이 된다.

다) 호송비 및 현지 체류비 등

원고는 이스탄불에서 한국까지의 호송비 28,764,000원 및 원고의 아들인 I의 항공료·현지 체류비 5,361,145원의 손해가 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현



지에서 제때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였을 비용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개호비

(1) 앞서 실시한 이 사건 장애의 내용이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시 거주자인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위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다만 중환자실 입원기간에는 별도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5. 9.부터 2013. 6. 16.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2013. 6. 17.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하되, 원고의 질병이나 병적 소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2013. 5. 8.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개호비' 부분 기재와 같이 153,408,185원이 된다.

#### 마)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한바,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153,630,393원[= 재산상 손해 192,037,992원(= 일실수입 31,923,635원 + 기왕치료비 6,706,172원 + 개호비 153,408,185원) × 피고의 책임 비율 80%]이 된다.



## 2)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성별,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 경위, 이 사건 장애의 정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기여도, 피고의 책임 비율 등 변론에 현출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 3) 손익공제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여행자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24,642,8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질병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질병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제739조의3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는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8,630,393원(= 재산상 손해액 153,630,393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한 2013.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 2018-05-29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민경현

                 판사      윤정운





### 손해배상액 계산표

#### [기조사항]

사건번호	2018가합588544	진행	손해배상(기)
성명		유형	공법상배
성별(남/여)	2	사고사 연월	52세 9개월 14일
생년월일		기대연령	66.99
사고 발생일	2018-6-08	연월 종료일	2047-4-28
가등권(개)	60	가등 종료일	2020-7-28

(노동능력상실률) 권태 후유장애 100%기준 기왕증 기억도 80%

구분	지표과	계정수치(%)	기왕증(%)	상실률(%)
영구	신경과	100.00%	80.00%	20.00%

#### [임실수입]

기간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노포만1	m2	노포만2	m1-2비용노포만	기간임실수입	
2018-8-08	2018-8-31	88,976	22	1,947,460	20%	8	2,9752	0	0	8	2,9752	1,089,808
2018-9-01	2014-4-30	84,168	22	1,851,652	20%	11	10,7884	8	2,9752	8	7,7852	2,879,087
2014-5-01	2014-8-31	88,888	22	1,952,324	20%	16	14,6206	11	10,7884	4	8,7871	1,444,489
2014-9-01	2015-4-30	87,906	22	1,933,732	20%	28	21,8188	16	14,6206	8	7,8984	2,888,888
2015-5-01	2015-8-31	88,888	22	1,975,462	20%	27	26,6868	28	21,8188	4	8,8169	1,424,991
2015-9-01	2016-4-30	94,888	22	2,105,496	20%	85	82,8051	27	26,6868	8	7,0728	2,888,821
2016-5-01	2016-8-31	89,582	22	1,972,404	20%	88	88,0878	88	82,8051	4	8,4685	1,521,888
2016-9-01	2017-4-30	102,828	22	2,262,216	20%	47	42,8408	88	88,0878	8	8,778	8,088,467
2017-5-01	2017-8-31	108,848	22	2,392,656	20%	61	48,1687	47	42,8408	4	8,8161	1,568,972
2017-9-01	2020-7-28	108,819	22	2,416,018	20%	86	78,8702	62	48,1687	65	27,2186	18,149,881
임실수입 합계액											81,928,888	

#### [기왕치도비]

종류	비용	기왕증(%)	비용노포만	기왕치도비
임실치도비	10,838,460	80	8,670,768	2,088,100
임실치도비	7,577,850	80	6,062,280	1,515,570
임실치도비	1,847,850	80	1,478,280	369,570
임실치도비	14,800,110	80	11,840,088	2,960,022
기왕치도비 합계액				8,708,172

84,846,860

#### [개호비]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비용노포만	기간개호비
2018-8-17	2018-8-31	88,976	1	2,554,289	80	1,9784	1,011,172
2018-9-01	2014-4-30	84,168	1	2,580,048	80	7,7852	8,972,274
2014-5-01	2014-8-31	88,888	1	2,688,888	80	8,7871	1,987,065
2014-9-01	2015-4-30	87,906	1	2,870,766	80	7,8984	8,962,887
2015-5-01	2015-8-31	88,888	1	2,724,288	80	8,8169	1,970,155
2015-9-01	2016-4-30	94,888	1	2,888,447	80	7,0728	4,053,713
2016-5-01	2016-8-31	89,582	1	8,088,077	80	8,4685	2,102,046
2016-9-01	2017-4-30	102,828	1	8,121,801	80	8,778	4,223,620
2017-5-01	2017-8-31	108,848	1	8,248,888	80	8,8181	2,155,888
2017-9-01	2047-4-28	108,819	1	8,840,827	80	191,8888	127,890,446
개호비 합계액							168,403,185

#### 임실수입+기왕치도비+개호비

192,087,992원

#### [책임제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68,880,888원
---------------	--------------

#### 재산상 손해배상액

168,880,888원

#### [위자료 및 합계]

종류	위자료	재산상 손해	위자료+재산상 손해
	28,000,000	168,880,888	178,880,888

끝.